#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49

발의연월일: 2020. 1. 2.

발 의 자: 박주민·김병기·기동민

신창현・박 정・정재호

설 훈・김상희・윤일규

권칠승 · 노웅래 · 권미혁

김종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는 지지부진하였음. 그러던 와중 최근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에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함.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 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짐,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만 임명 가능, 부위원장은 호선)(안 제19조,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
- 나. 법원행정처 폐지(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처 설치, 대법원 사무국을 설치, 법원행정처장의 대외업무는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하게 됨)(안 제10조, 제19조, 제67조의6, 제67조의7, 제70조 등)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 라. 법관인사위원회 폐지(안 제25조의2)
- 마.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지방법원부장판사제도 유연화(안 제26 조, 제30조 등)

####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건의 등을 위하여 대법원,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의 판사 중 법관대표를 선출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다.
  -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1항의 각 기관별 판사의 수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할당하되, 100명 이상의 법관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각급 법원"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등법원"을 "대법원·고등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를 "대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관리관 또는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관·전산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과"

로, "보(補)하고"를 "보하며"로, "법원사무관"을 "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부이사관·전산서기관·법원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직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 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를 "정무직으로"로 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를 "수석판사, 선임판사"

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장판사는"을 "부의 구성원 중 1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법원장"을 "고등법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인사위원회"를 "사법행정위원회"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제1항 중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를 "보직(補職)과 전보는 이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을 "회생법원장은"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대법원장은"을 각각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사법행정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인사위원회"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인사위원회"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4호 및 제6호 중 "대법원장"을 각각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파견금지 등) ①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 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3조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4조의3제3항 중 "대법원장은"을 "사법행정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편제1장의 제목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 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 3. 법원의 인사·예산(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고서의 검 토를 포함한다)·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 무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법행정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4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은 법관이 아닌 자여야 하며,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1. 법관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행정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고 행정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4.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67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사법행정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된 위원 중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없다. 이 경우 국회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단에 해당하는 위원을 특정하여 선출·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선출·추천하여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67조의5(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상근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의6(사무처) ① 사법행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 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차장·사무처장비서관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 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처에는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고,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⑦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8 그 박에 사무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의7(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 ② 사무차장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 ③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차장이 될 수 없다.
  - ④ 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이사 관 또는 전산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 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 업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이사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 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 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부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 중 "법원행정처장"을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4조의4제1항 중 "법원행정처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4조의5제2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1항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6조의6제2항 본문 중 "대법원장이"를 "사법행정위원회가"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3항 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파견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의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 제9조(사법행정사무) 사법행정위 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u>제외하고는</u>-----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 <삭 제>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 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 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 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 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 <삭 제> 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 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①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건

의 등을 위하여 대법원, 각급

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 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 을 둘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 구원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기관의 판사 중 법관대표를 선출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다.

-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1항 의 각 기관별 판사의 수를 고 려하여 각 기관별로 할당하되. 100명 이상의 법관대표로 구성 한다.
- ③ 그 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0조(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 의 사무국) ① 대법원·고등법원

- ② (현행과 같음)
- ③ 대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 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관리관 또는 법원이사관·시설 이사관·공업이사관·전산이사관

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 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 (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 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 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 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 사관·법원서기관·<u>법원사무관</u> 또 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제13조(대법원장) ① (생 략)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u>대법원의 직</u> 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 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 략)

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과
<u>보하며</u>
시설부이사관·시
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공업서
<u>기관·전산부이사관·전산서기관·</u>
법원사무관
④ (현행과 같음)
113조(대법원장) ① (현행과 같
<u>이</u>
②
이 법
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
법원의 직원
,
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u>(법원행정처)</u> ① 사법행정 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 원에 <u>법원행정처</u>를 둔다.
  -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 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 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 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제 (생 략)
  -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u>판사로 보하거나</u>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조 <u>(사법행정위원회)</u> ①
<u>사법행정위원회</u>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
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사법행정위원회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
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u>있다.</u>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
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
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
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무직으로</u> -

③ ~ ⑤ (생 략)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 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 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 임에 관한 사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 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사항
-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1. 법관 3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 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었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제26조(고등법원장) ① ~ ③ (생략)
  -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u>수석부장판</u> 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⑥ (생 략) 제27조(부) ① (생 략)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 ③ <u>부장판사는</u>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④ (생 략)
  - ⑤ <u>대법원장</u>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제26	6조(고등법원장) ①	~ ③ (5	현
항	]과 같음)		
4	)		- –
			- —
		- <u>수석판</u> 시	<u>},</u>
<u>そ</u>	<u> 임판사</u>		- —
	) • ⑥ (현행과 같음)		
	7조(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gt;</u> > 보이 그림이 중 :	1 6] ()	
(3	) <u>부의 구성원 중 :</u>	<u> 1인은</u>	- —
			_
		_	_
<u> </u>	) (현행과 같음)	•	
	) 고등법원장		_
			_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 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 ② -----제27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조제3항-----.
- 략)
  -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30조(부) ① (생 략)
  -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 제31조(지원) ① ~ ⑤ (생 략)
  -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 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


- 제28조의3(부) ① (생 략) 제28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 제29조(지방법원장) ① ~ ③ (생 제29조(지방법원장) ① ~ ③ (현 행과 같음)
  -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 |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 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 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 다.
      -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31조(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u>	_
제30조제2항-	

항을 준용한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
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
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
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
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7조(가정법원장) ① ~ ③ (생
략)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8조(부) ① (생 략)

-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u>제27</u>
   <u>조제2항</u>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지원) ① ② (생 략)
  -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u>제27조제2항</u>·제3항 및 제31 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 ③ (생 략)
  -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u>제26</u>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33조(시·군법원) ① <u>사법행정위</u>
<u> 원회는</u>
<u>.</u>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가정법원장)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u>제26조</u>
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
<u>.</u>
제38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u>
30조제2항
제39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
<u>♥</u> )
③
제30조제2항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ul><li>④</li></ul>
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40조의3(부) ① (생략)

-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 ③ (생 략)
  -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하다.

제40조의6(부) ① (생 략)

-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1조(법관의 임명) ①・② (생 략)
  -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 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① · ② (생 략)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1. (생략)
  - 2. 법원행정처장
  - 3. ~ 8. (생략)
  - ④ ~ ⑨ (생 략)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43조(결격사유) -----

제40조의3(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利</u>
30조제2항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۸</u>
<u>2</u> 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
ठॅो
 제40조의6(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u> *
30조제2항
제41조(법관의 임명) ①·② (현
행과 같음)
③사법행정위원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3)
• 
•

- 1. (현행과 같음)
- 2.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3. ~ 8. (현행과 같음)
- ④ ~ ⑨ (현행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u>보직(補</u> 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u>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u>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 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① <u>대법원장은</u> 판사에 대한 근 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 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 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보직) ① <u>보직(補</u>
職)과 전보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법행정위원
<u>회가</u>
②
<u>회생법원장은</u>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b>.</b>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
한민	<b>라</b> .			

④ (생략)

<신 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 가 끝난 판사는 <u>인사위원회</u>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 ② · ③ (생 략)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④ (현행과 같음)
<u>제</u>	44조의3(인사원칙의 공개) 사법
	행정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
	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
	로 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제	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u>사법행정위</u>
	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
	직)
	사법행정위원
	<u>회</u>
제	49조(금지사항)

- 1. ~ 3. (생 략)
-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 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5. (생략)
- 6. <u>대법원장</u>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 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생략)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 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① <u>대법원장은</u>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법행정위원회</u>
5. (현행과 같음)
6. <u>사법행정위원회</u>
7. (현행과 같음)
제50조(파견금지 등) ①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
<u>다.</u>
제51조(휴직) ① <u>사법행정위원회</u>
는
<del></del>
<u>.</u>
1.・2. (현행과 같음)

2	(생	략)
<u> </u>	\ 0	1/

-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 (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 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② (생략)
  -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 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이 임용한다.
  - ④ ~ ⑥ (생 략)
-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 ③ (생략)
  -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 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 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 청할 수 있다.
  - ⑤ (생략)
- 제54조의3(조사관) ①・② (생 제54조의3(조사관) ①・② (현행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겸임 등) ① <u>사법행정위원</u>
회는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법원직원)
사법행정위원회가
<u>.</u>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②
(현행과 같음)
3
사법행정
 위원회가
<u>4</u> ~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⑤ (현행과 같음)

과 같음)

- ③ <u>대법원장은</u>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 청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64조(법원경위) ① (생 략)
  -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u>대</u>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 ③ (생략)

제1장 <u>법원행정처</u>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 절 정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

-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 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 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위원회는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법원경위) ① (현행과 같
<u>♦</u>
②
사법행정위원회가
③ (현행과 같음)
제1장 <u>사법행정위원회</u>
제67조(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
결 등)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u>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3. 법원의 인사·예산(예산요구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3. 법원의 인사·예산(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3. 법원의 인사·예산(예산요구  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  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법원규칙의 제·개정  2.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3. 법원의 인사·예산(예산요구  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검토보  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회  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

-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 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 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 관을 둔다.
-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 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 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u>하</u>는\_사항

- 제67조의2(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등)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 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선 출하는 6명(상임위원 3명을 포 함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4명을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 하는 위원은 법관이 아닌 자여 야 하며,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둘 이상의기관에서 해당 사무에 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각기관에서 종사한기간을 합산한다.

- 1. 법관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 <u>던 사람</u>
-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 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행정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고 행정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 부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4.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사법행정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 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④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 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원회 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된 위원 중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국회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단에 해당하는 위원을 특정하여 선출·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수행한다.
  - ④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는 새로 선출·추천하여 임명하 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67조의5(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매달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사법행정위원회는 안건의 연구·검토·심의를 위하여 산하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관 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하되, 상근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의6(사무처) ① 사법행정위 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차 장·사무처장비서관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 좌하고 사무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처에는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⑥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고,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⑦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그 박에 사무처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7(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 ② 사무차장은 사법행정위원회 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그 보 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 로 한다.
- ③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처 장 또는 사무차장이 될 수 없 다.
- ④ 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 장은 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공 업이사관 또는 전산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 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 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 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 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 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 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다.

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공업서기관·전산이사관·전산부 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 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 업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부 이사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사법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삭 제>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 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 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 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 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 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 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 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 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 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 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 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 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 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 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 기관으로 보한다.
-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

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조직) ① (생 략)

- ② 원장은 <u>대법원장</u>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 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다.
- ③ ~ ⑤ (생 략)
-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 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 장은 검사 중에서 <u>대법원장이</u> 보하다.
  -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대법원장이</u>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1. ~ 5. (생략)
  - ③ ④ (생 략)
-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제	7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법행정위원회</u>
제	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
	<u>행정위원회가</u> ②
	사법행정위원회가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	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u>사무처장</u>

있다.

- ② (생략)
-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① (생략)
  - ② 운영위원회는 <u>대법원장이</u>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 ③ (생략)

제76조의2(조직) ① (생 략)

- ② 원장은 <u>대법원장</u>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 ③ ~ ⑤ (생 략)
-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 연구위원은 <u>대법원장이</u>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 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대법원장이</u> 보하

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원회가------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 ~ 4. (생 략)1. ~ 4.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 원회) ① (생 략)
  - ② 운영위원회는 <u>대법원장이</u>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 로 한다.
  - ③ (생략)
- 제77조(조직) ① (생 략)
  - ② 원장은 <u>대법원장</u>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 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 제81조(조직) ①・② (생 략)
  - ③ 관장은 <u>대법원장</u>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 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④ (생 략)

<del></del>
1. ~ 4. (현행과 같음)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
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사법행정위
원회가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법행정위원회</u>
제81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
음)
③사법행정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